

## | 주원광교, 안양관양, 와정신안1:21 | 경기행복주택 공가세대 입주자 및 예비자 추가모집 공고문

# [자격완화 선착순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 9. 30.]

## 1. 임대대상

구분	건설위치	총세대수	건물층수	사용승인(예정)
수원광교 경기행복주택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84	204호	12층	사용승인 완료
안양관양 경기행복주택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98-25	56호	9층	사용승인 완료
화성진안1 경기행복주택	화성시 진안동 938	16호	5층	사용승인 완료
화성진안2 경기행복주택	화성시 진안동 882-1	15호	5층	사용승인 완료

### [요약]

#### ■ **입주자격**(일부내용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 본문의 세부 자격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분	입주자격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소득업무 종사기간 총5년이내 포함)
신혼부부·한부모 기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 입주자격 완화 사항

(1) 소득요건 완화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u>150% 이하(청년 본인은 120% 이하)</u>
(2) 자산요건 완화	<ul><li>총자산가액 합산기준 <u>150% 이하</u></li><li>자동차가액 10년 공공임대주택 기준으로 완화</li></ul>
(3) 지역기준 완화	∘ 제한 없음
(4) 고령자 무주택기간 완화	。 기준일 현재 <mark>무주택세대구성원</mark> 은 신청 가능

## ■ 입주자 선정절차(선계약 → 입주자격 검증 후 입주)

[현장 선착순 청약.접수: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하우스비전(02-3677-6741)]

현장 선착순 청약.접수

동호지정 신청 **현장**계약 [계약금입금]

자격심사 서류접수 마감 입주자격 조사 (소득 등)

입주

10월7일(월) ~ 11월 29일(금) [10:00 ~ 17:00]

접수당일

접수당일

청약일로부터 7일이내

약3월소요

개별안내

#### ■ 유의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및 청년계층은 무주택자)을 대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계약 합니다.
- 선계약 후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mark>적격자인 경우만 계약은 유효</mark>하고 입주가 가능며 또한, <u>검증완료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할증조건 포함)으로 입주 전 변경계약</u>을 하여야 합니다. <u>부적격자는</u> 계약해지(해제) 통보 없이 입주 적격자 발표 후 신청 계좌로 계약금만을 반환(이자지급 없이 약10일 전후 지급)하면 계약은

해제 됩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경우의 계약 해지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청약신청 월의 1일이 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 입니다.(단, 2019년 9월 신청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 입주자격 조사는 계약(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 모집대상 주택은 입주자격 조사완료 이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적격자 안내일로 부터 30일이내 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당첨자로 확정된 분은 입주 후 주소지를 반드시 해당 소재지로 주소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휴대폰 번호 또는 주소가 신청서와 달리 변동된 분은 정정을 하셔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행위 등은 임대주택법에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 경기행복주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해당세대 전원의 소득자산 등을 확인합니다.
- 행복주택은 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2. 공급일정

#### ■ 공급일정

내 용	일 정	장소 등
모집 공고	2019.9.30(월)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u>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u>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예비자 선착순 신청 접수)	<mark>2019.10.7(월)</mark> ~ 2019.11.29(금)	• 경기행복주택 1차 계약관리센터 코오롱하우스비전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02-3677-6741) (계약가능 시간) 평일 10:00~17:00. (단, 점심시간(11:30~13:00), 주말, 공휴일 및 10월 4일 10월 14일 제외 (상담불가)) 2층 도착 후 전화연락(02-3677-6741) (계약방법) 선착순 동호지정 신청 ⇨ 계약금(100만원) 입금 ⇨ 계약체결[당일완료] ※ 유의사항 모집 최초 2일간(10.7(월)~10.8(화))은 사전 약속 필요 없으나, 이후(10.10(목)~11/29(금)) 방문시, 반드시 사전 약속 후 방문하셔야 상담/접수 가능합니다. (사전 약속없이 방문하실 경우 상담/접수 불가하며,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접수시작 시간(10시) 이전 대기자의 계약(접수)순서는 현장추점에 의함. 예비입주자 신청자는 공가세대 발생시 접수순서에 따라입주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자격 심사 서류접수 마감	계약일(또는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우편제출 : [(우)13837] 경 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 6층 코오롱하우스바전 경기행복주택 계약관리담당 (02-3677-6741)
(계약자, 예비자 모두 제출)	※ 계약(신청)시 제출가능	<ul><li>※ 현장접수 가능</li><li>※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안내없이 계약이 취소됨</li></ul>
무주택.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조사	약 3개월 소요	•무주택.소득.자산 등 모집공고의 입주자격을 조사
부적격자 소명	별도안내	<ul><li>※ 적격자는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li><li>※ 부적격시, 전화, 우편 등으로 안내하며, 소명기간 내 소명 않을시 별도 안내없이 접수 취소됨.</li></ul>
입주안내	별도안내	※ 신청시 제출된 휴대폰으로 개별안내(수신 동의자)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임대조건

### ■ 임대대상

	고그		거서	ㅁ지ㅎ스		세대		[적(m²)		
단지구분	공급 형별	공급대상	건설 호수	모집호수 (예비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기타공용	공용면적 주차장	합계	비고
		신 <del>혼부부•</del> 한부모가족/청년	133	-						주거약자 설계주택 5호 포함
	36	신 <del>혼부부•</del> 한부모가족/청년 /고령자	11	-	36	22	10	19	87	주거약자 설계주택
수원광교		고령자	6	(3)						설계수택
	38	신 <del>혼부부•</del> 한부모가족/청년	10	<b>2</b> (6)	38	22	10	20	90	
	4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4	7 (21)	44	26	12	24	106	
안양관양	36	신 <del>혼부부•</del> 한부모가족/청년	50	3 (15)	36 18	18	13		67	주거약자 설계주택 6호 포함
1000		50	주거급여	1	-		10			07
		고령자	5	-						설계주택
화성진안1	20	청년	14	5 (15)	20	16	5	_	41	
140000	20	O 단	2	(15)	20	10	)	-	41	주거약자 설계주택
	17		2	0	17	14	3	-	34	
	18		1	(3)	18	15	4	-	37	
화성진안2	20	청년	10	(9)	20	15	4	-	39	
	22		2	-	22	17	4	-	44	주거약자 설계주택

- 공급신청은 공급단지별, 공급유형별, 공급대상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원광교 행복주택 36형 주거약자 설계주택 인양관양 행복주택 36형 주거약자 설계주택은 공기발생시 신혼부부•한부모기족/청년 /고령자 계층의 예비자에게 통합하여 공급됩니다.

### ■ 임대조건

	77				임대조건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단지구분	공급 형별		공급대상		공급대상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증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9 Z			합계	계약금	잔금	(원)	증감 구분	_ (천원)	(원)
		시	<del>혼부부•</del> 한부모가족	69,369	1,000	68,369	346,830	(+)	103,369	176,830
				09,309	1,000	00,309	340,030	(-)	35,369	460,160
			소득 有 (기준소득 초과)	69,369	1 000	68,369	346,830	(+)	103,369	176,830
				09,309	<u>1,000</u>		340,030	(-)	35,369	460,160
		청년 계층	소득 有 (기준소득 이하)	62,432		61,432	312,140	(+)	93,432	157,140
			(기준소득 이하)	02,432				(-)	31,432	415,470
수원광교	36		소득 無	58,963		<u><b>1,000</b></u> 57,963	294,800	(+)	87,963	149,800
TE 0 TE			·	30,903	1,000			(-)	29,963	391,460
			고령자	69,369	1,000	68,369	346,830	(+)	103,369	176,830
		고령자 (기준소득 초과)	기순소늑 조과)	09,309	<u>1,000</u>	00,309		(-)	35,369	460,160
			고령자	65 001	1.000	64,901	329,500	(+)	97,901	169,500
		고령자 (기준소득 이하)		65,901 <u><b>1,000</b></u>	1,000	04,301	329,300	(-)	33,901	436,160
	38	시	<del>혼부부•</del> 한부모가족	73,223 <u><b>1,000</b></u>	1 000	72 222	266,090	(+)	109,223	186,080
	20				72,223	366,080	(-)	37,223	486,080	

		1	\ <del></del>					(.)	100 222	100,000
			소득 有 (기준소득 초과)	73,223	<u>1,000</u>	72,223	366,080	(+)	109,223 37,223	186,080 486,080
		처녀						(+)	97,900	169,470
		청년 계층	소득 有 (기준소득 이하)	65,900	<u>1,000</u>	64,900	329,470	(-)	33,900	436,130
								(+)	93,239	156,160
			소득 無	62,239	<u>1,000</u>	61,239	311,160	(-)	31,239	414,490
	4.4		   <u>혼부부•</u> 한부모기족	04705	1.000	02.705	202.000	(+)	126,785	183,000
	44	긴	! <del>≥~~•</del> ℃ <del>~</del> ±/ <del> </del>	84,785	<u>1,000</u>	83,785	393,000	(-)	42,785	533,000
		,	혼부부•한부모가족	64,652	1,000	63,652	323,250	(+)	96,652	163,250
		- '-		04,032	1,000	03,032	323,230	(-)	32,652	429,910
			소득 有 (기준소득 초과)	64,652	1,000	63,652	323,250	(+)	96,652	163,250
				04,032	1,000	03,032	323,230	(-)	32,652	429,910
		청년 계층	소득 有 (기준소득 이하)	58,186	1,000	57,186	290,920	(+)	87,186	145,920
		계증	(기순소늑 이하)	30,100	1,000	31,100	230,320	(-)	29,186	387,580
안양관양	36		소득 無	54,954	1,000	53,954	274,760	(+)	81,954	139,760
	50		<u> </u>	3 1,33 1	1,000	33,331	27 1,7 00	(-)	27,954	364,760
			주거급여	48,489	1,000	47,489	242,420	(+)	72,489	122,420
					3,000	,		(-)	24,489	322,420
		,	고령자 기준소득 초과)	64,652	1,000	63,652	323,250	(+)	96,652	163,250
				,	3,000			(-)	32,652	429,910
			고령자 기준소득 이하)	61,419	1,000	60,419	307,080	(+)	91,419	157,080
		(		·		,	·	(-)	31,419	407,080
			소득 有 (기준소득 초과)	24,475	1,000	23,475	203,970	(+)	36,475	143,970
						,		(-)	12,475	243,970
화성진안1	20		分뉯	소득 有 (기준소득 이하)	22,028	1,000	21,028	183,580	(+)	33,028
		게궁	(기군꼬득 이야)			,		(-)	11,028	220,240
			소득 無	20,804	1,000	19,804	173,380	(+)	30,804 10,804	123,380 206,710
			<del> </del>					(-)	30,804	123,330
			소득 有 (기준소득 초과)	20,804	1,000	19,804	173,330	(+)	10,804	206,660
	17	처녀							27,724	111,000
	17 & 18	청년 계층	소득 有 (기준소득 이하)	18,724	<u>1,000</u>	17,724	156,000	(+)	9,724	186,000
	18	, 11 0						(+)	25,683	107,330
			소득 無	17.683	<u>1,000</u>	16,683	147,330	(-)	9,683	173,990
			사드 右					(+)	36,475	143,970
			소득 有 (기준소득 초과)	24,475	<u>1,000</u>	23,475	203,970	(-)	12,475	243,970
+1.1.7101.		청녀	소드 右					(+)	33,028	128,580
화성진안2	20	청년 계층	소득 有 (기준소득 이하)	22,028	<u>1,000</u>	21,028	183,580	(-)	11,028	220,240
		" "	,					(+)	30,804	123,380
			소득 無	20,804	<u>1,000</u>	19,804	173,380	(-)	10,804	206,710
			수득 有	26.655	4.000	05.000	224277	(+)	39,923	159,350
			소득 有 (기준소득 초과)	26,923	<u>1,000</u>	25,923	224,350	(-)	13,923	267,680
	22	청년		0.4.65.1	4.000	22.55	204 222	(+)	36,231	141,920
	22	청년 계층	소득 有 (기준소득 이하)	24,231	<u>1,000</u>	23,231	201,920	(-)	12,231	241,920
			,	22.004	1.000	21.004	100 700	(+)	33,884	135,700
			소득 無	22,884	<u>1,000</u>	21,884	190,700	(-)	11,884	227,360

- 경기도시공사에서 모집한 경기행복주택의 계약자 및 예비자(입주자는 제외)가 금회 모집한 경기행복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기존 계약(자격, 권리)은 해지(소멸)되며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금회 모집시 공고한 조건(입주자격, 임대조건, 입주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 신청 가능한 형별 및 임대조건을 확인하시고, <u>1세대 1단지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u> 됨을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u>공급대상과 신청자격(계층, 소득)에 따라 차등</u>하여 공급하며, 신청자격별 <u>임대료</u> <u>할증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u>되고 재계약 시에도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관한 기준에 따라 추가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청년계층은 소득 유무에 따라 다른 임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해지 및 공가주택에 대한 공급대상 변경 등에 따라 입주대상 주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주택은 금회 모집 대상자(예비자 포함)에 포함하여 공급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건설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약, 공급형별 공급대상 변경 등으로 공가세대 발생시 접수순서(또는 당첨순서).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금회 공급은 입주자 → 예비입주자 순으로 각각 선착순 접수하고, 입주자격 조사.심사를 거쳐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라 선계약후 신청자격에 적합한 분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최종 선정 합니다.
- ※ 입주자격 조사.심사는 신청월의 마지막일 현재 까지 신청한 분을 모아 매월 일괄로 신청하며, 신청일 로부터 3월이 소요됩니다.
-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을 해지함
- 예비입주자의 동호 배정은 공가세대 발생시 접수순서에 따라 지정.선택하며, 계약은 확정된 입주자 격에 따른 임대조건 변경 또는 부적격시 해지(해제)를 조건으로 선계약 합니다.
- 금회 임대대상은 공급대상(계층)을 변경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모집 대상도 동호의 배정 결과에 따라 세부 주택형이 다르거나 시설이 다르게 시공되었을 수 있고 현시설(또는 현 계획시설) 상태로 공급되니 계약전 반드시 세부 평면과 시설의 설치현황을 확인(방문하여 세부 도면 등의 열람이 가능함)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 일부세대의 현관 정면 또는 부근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시설의 현황을 열람하여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6년이고,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20년 이며,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경우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일 경우 10년입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경기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 및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mark>입주시점 등 공사가 지정하는 일정에만 변경이 가능</mark>합니다.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는 이율 6%적용하고,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는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체도 불가합니다.
- 입주시는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향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평형, 입주일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신청 차수 및 자격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대상지별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공통사항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u>무주택세대구성원</u>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하고 대학생 및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사람은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10.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수원광교	4-1. 청년 계층
안양관양	4-2. 청년 계층
화성진안1	4-3. 청년 계층
화성진안2	4-4. 청년 계층

#### ■ 신청자격

입자 선정 판진 준일 현재 무주투로서 아마니 요건신청자 본인 청춘인 경우 ① 와 ② · ③ 샤호선생의 경우 ① 와 ② · ⑤을 모두 갖춘 자

- ①-②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①-④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mark>총5년</mark> 이내인 자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mark>월평균소득의</mark> 15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주택공급 신청자	기그의스	신청자격 월	명균 소득기준	임대료가 할증되는 월평균 소득기준	
신청자	기구권구	해당세대	본인	해당세대	본인
	3인 이하	8,102,721원 이하	6,482,177원 이하	5,401,814원 초과시 할증	4,321,452원 초과시 할증
세대원	4인	9,247,803원 이하	7,398,243원 이하	6,165,202원 초과시 할증	4,932,162원 초과시 할증
있는 세대조	5인	10,049,798원 이하	8,039,838원 이하	6,699,865원 초과시 할증	5,359,892원 초과시 할증
세대주   	6인이상	5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973,539원(본인은 778,832원)을 합산하여 산정		5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49,026원(본인은 519,221원)을 합산하여 초과시 할	
그외	-	-	6,482,177원 이하	-	4,321,452원 초과시 할증

-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799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 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확인함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미가입자 포함)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간주함
- ※ ①-⊕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하며,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 <mark>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mark>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당점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1) 접수순[매일 접수개시 시간(10시) 이전 대기자의 접수순서는 현장추첨에 의함]

## 수원광교 4-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안양관양 4-5.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 현재, <mark>무주택세대구성원</mark>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앤와 ②~⑤, 예비신혼부부는 ①-앤와 ③ ~⑥, 한부모기족은 ①-ⓒ와 ③ ~⑤)을 모두 갖춘 사람

- ①-② (신혼부부) 혼인중일 것
- ①-④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⑤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기준
3인 이하	8,102,721원 이하
4인	9,247,803원 이하
5인	10,049,798원 이하
6인이상	5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973,539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42,0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799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출산 전인 경우 임신진단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대표자 1인이 신청하되 예비배우의 신청 정보도함께 작성하여야함.(2인 모두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탈락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 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1) 접수순[매일 접수개시 시간(10시) 이전 대기자의 접수순서는 현장추첨에 의함]

수원광교 안양관양 4-6. 고령자 4-7. 고령자

#### ■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기준	임대료가 할증되는 월평균 소득기준
	3인 이하	8,102,721원 이하	5,401,814원 초과시 할증
	4인	9,247,803원 이하	6,165,202원 초과시 할증
	5인	10,049,798원 이하	6,699,865원 초과시 할증
	6인이상	5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
		973,539원을 합산하여 산정	액 649,026원을 합산하여 초과시 할증

-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기액 합산기준 420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기액이 2.799만원 이하 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 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1) 접수순[매일 접수개시 시간(10시) 이전 대기자의 접수순서는 현장추첨에 의함]

## 5. 신청 및 선정방법 등 안내

#### ■ 신청절차

1) [현장 접수: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하우스비전]



- 모집 최초 2일간(10.7(월)~10.8(화))은 사전 약속 필요 없으나, <u>이후(10/10(목)~11/29(금))</u> 방문시 반드시 사전 약속 후 방문하셔야 상담/접수 가능합니다. ( 사전 약속없이 방문하실 경우 상담/접수 불가하며,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접수/문의 가능일시 : 평일 10:00~17:00 (단, 점심시간(11:30~13:00), 주말, 공휴일 및 10월4일, 10월14일 제외)
- 신청당일 공급신청 접수대장에 등록 서명하신 후 등록순으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므로(예비 입주자는 등록순으로 선정) 본 모집 공고문의 입주자격을 필히 확인하신후 신청서류 및 계약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매일 접수시작 시간(10시) 이전 대기자의 계약(접수)순서는 현장추첨)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해당순번을 3회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동호지정을 원하는 경우 등록명부에 새로 서명한 후 해당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가능합니다.
- <u>동호지정 당일 계약 마감시간(17시) 전 까지 지정계좌로 계약금을 입금 후 계약체결해야 하며 마감시간 전까지 미입금 및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해당 동호는 익일에 재공급 합니다.</u>
- 계약금은 신청형(계층)별 구분없이 100만원 이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인 경우 입주가 가능하고,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이 해제되는 조건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금 반환시 이자는 없습니다.
-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을 해지함
  - ※ 부적격자의 소명요청은 신청서(또는 계약서)의 주소로 요청합니다.

#### ■ 서류제출 방법

- ㅇ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일정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 및 현장접수 모두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서류접수 마감일 까지 발송된 것을 유효한 접수로 인정합니다. (특정일 및 특정시간에 신청자가 많아 현장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우편접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o 준비서류는 아래 "7.신청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정자로 서명(흘림 서명 금지) 또는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 6. 입주자격 검증 및 금융자산 조회 안내

####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 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 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시경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sup>\*</sup>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7.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모든 서류는 입주자 선정 판단 기준일 이후 발급]

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년 계층"은 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 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부수
<b>신청서</b> (붙임 서식)	. 신청자 작성 제출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서식)	. <b>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b>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 서식)	. <b>동의방법 :</b>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mark>정자 서명 또는 날인</mark>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b>자산 보유</b> <b>사실확인서</b> (붙임 서식)	<ul> <li>.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li> <li>★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li> <li>★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 확인원</li> <li>★ 비상장주식, 출자금/출자자본 해당 증명자료</li> <li>★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li> <li>※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에 표시하여 정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li> </ul>	1통
주민등록표등본	<ul> <li>*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li> <li>.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ul>	1통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b>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b> 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ul> <li>* <u>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u></li> <li>&lt; 아래 해당자만 제출&gt;</li> <li>.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li> </ul>	1통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 .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혼부부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 당서류 추가제출	1통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이 안된 경우 제출>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신고일~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태아포함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이 동일하므로 제출 안해도 무방)	1통
반환통장사본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적금통장은 불가)	1통

□ 기타 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붙임4 서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청년 (만19세이상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만39세이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청약통장 사본(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 년 계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국민연금공단 등
, So	사회초년생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지방고용노동청
		. <b>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b>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청약통장 사본(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제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 (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 필요한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제출)	주민센터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붙임 서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붙임 서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됨 . 현장 방문시 준비서류 - 당사자 2인 모두 방문시 :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 당사자 1인만 방문시 :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미방문자의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 청약통장 사본(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제출)	주민센터 주민센터
계 층	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주거	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재청약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 8. 계약 안내

### ■ 공급

- 계약금 입금계좌 : 농협 301-0208-7830-31 (예금주) 경기도시공사
- \* 계약금은 계약자 본인 명의로 입금후 입금 확인증을 계약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o 계약장소 : 경기행복주택 1차 계약관리센터 코오롱하우스비전 모집 최초 2일간(10.7(월)~10.8(화))은 사전 약속 필요 없으나, 이후(10.10(목)~11.29(금)) 방문시 반드시 사전 약속 후 방문하셔야 상담/접수 가능합니다. ( 사전 약속없이 방문하실 경우 상담/접수 불가

하며,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 2층 접견실 ( 2층 도착 후 전화연락 (02-3677-6741) )
- \* 전화: 02-3677-6741
- \* 상담가능일시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11:30~13:00)과 주말, 공휴일 및 10월4일, 10월 14일은 제외.)
- ㅇ 계약방법 : 선착순 동호지정 신청 ⇨ 계약금(100만원) 입금 ⇨ 계약체결[당일완료]
- \* 매일 접수시작 시간(10시) 이전 대기자의 계약(접수)순서는 현장추첨에 의함
- \* 방문계약자는 반드시 아래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선착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입금 확인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 대리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에 법정 대리인 인감날인)
- ※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위임장(공사양식에 계약자 인감날인)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하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 ※ 자필서명 방식으로 위임장 작성자는 계약자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 [예비 당첨자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퇴거, 공급대상 변경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때 순번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인 경우 입주함(검증후 확정된 입주자격의 임대조건으로 입주전 계약변경)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휴대폰 문자와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 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 하여야 함

# 9.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² 이하의 주택(20m²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b>フ</b>	·분	산정방법
	- <b>=</b>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 동 산	<ul>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li> <li>*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i> <li>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li> <li>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자 동 차	<ul>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ul> <li>「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ul>
총 자 산	금융 자산	<ul> <li>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li> <li>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 <li>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li> <li>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li> <li>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li> </ul>
	기타 자산	<ul> <li>「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 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자	동차	<ul>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li> <li>「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I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ul> <li>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li> <li>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li> <li>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li> </ul>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 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 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바세저 자근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총 자산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 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 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7 0 TI JL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그 오저 나 . ㅈ 치 경 기
	ı	금융자산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대출금	
/ <u>소</u> 7		부채 ŀ산 산정 시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7	자산금액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합계에서 차감)		에서 차감)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10.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2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히	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 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성	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 불가)을	1명 이상(10년) 년 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 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		
관한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었다.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 선호부부계층 및 신혼부부계층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기 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	우 :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초과할 수 없음) 접지역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 우,		
예비입주자		-	나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ul> <li>● 갱신계약자격</li> <li>•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li> <li>•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li> <li>*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시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li> <li>•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li> <li>•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li> <li>■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li> <li>•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행복주택의 표준임다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li> <li>•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li> <li>*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료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li> </ul>				
	소득기준 초과 비율 10%이하 10%초과 30%이하 30%초과	최초 갱신계약 시 110% 120% 130%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20% 130% 140%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신청자격	<ul> <li>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 청년 계층은 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li> <li>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li> </ul>
중복입주 금지	<ul> <li>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모두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li> <li>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단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li> </ul>
신청 서류	<ul> <li>신청서류는 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i> </ul>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및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안내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기타사항	<ul> <li>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 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li> <li>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li> <li>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li> <li>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li> <li>연락처 등 변동사항을 경기도시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계약 및 입주 관련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li> <li>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li> </ul>

## 11. 지구 및 단지 특성 및 유의사항

#### ■ 단지별 유의사항

#### 【 공통사항 - 수원광교 / 안양관양 / 화성진안1 / 화성진안2 】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부지 현장 및 주변여건 등을 사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 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 하여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부대복리시설 및 펌프실, 지하저수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는 기계실 없는 타입(MRL)으로 구조상 메인판넬이 최상층에 위치하는 관계로 기계 작동음 등의 소음이 상층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전기+통신)이 현관 또는 거실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녹화되고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 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상가가 설치 . 운영되는 1층 일부에는 단지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합니다
- 홍보관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특정지구의 예시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대상과 관계가 없으며, 해당 지구 역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투시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 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입주자격심사 종료 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세대로 인입되는 각종 배관들에 의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수원광교 】

- 수원광교 경기행복주택은 총 204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주거용도(상가 등)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입니다.
- 사업부지 반경 500m 이내에는 국도43번(8차선 이상),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립 한누리유치원, 연암공원,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봉녕사 승가대학,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우만초등학교,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주유소 등이 있습니다.
- 서측으로는 40미터(8차선 이상)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공립 한누리유치원(17학급 규모)으로 인해 유치원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어린이 등하교시 차량으로 혼잡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2층에 위치한 상가는 분양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이 설치됩니다. 소음도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이 입주 이후, 설치되는 업종에 따라 달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2층에 설치된 지역편의시설은 관할 구청 협의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29대이며, 일반주차 83대, 장애인 4대, 확장형 42대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법정 주차대수 외에 주차 2면은 카쉐어링 전용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6대이며 지하주차장 에 공동주택 주차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및 상가, 상가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 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두 동을 연결하는 2,6,8,10층의 데크브릿지, 피트니스, 육아나눔터, 공중정원 및 F동 10호라인 옆에 층별로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옥상텃밭, 각 층 엘리베이터 홀에는 계절창고, 지하층에는 개별창고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시설들은 모두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입니다. 이용시 입주민간 자율적으로 정한 규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옥상에 텃밭이 조성되어 입주민들의 이동으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대지 여건 및 수원시 규정에 따라 대지 북측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옥상텃밭의 작물 및 비료 등은 이용하는 세대가 직접 구입하여 재배하여야 하며, 공용시설로 제공되는 일부 시설물외 관련 장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텃밭의 관리는 각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텃밭 및 화단 관리시 사용하는 상하수 등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층 중정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의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천장 마감은 없으며 스프링클러 배관은 노출되어 시공 됩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 됩니다.
- 중정 공간은 평소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지만 비상시(화재 등)와 유지보수 작업시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받은 차량에 한해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 다수의 부대복리시설(실내어린이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워크스테이션, 주민자치실 등)이 <u>102동</u>에 집중 배치되어 있으므로, <u>101동</u> 입주자들은 브릿지를 통해 건너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층의 실내어린이놀이터는 6세 이하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며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 주거약자(고령자) 세대는 2층에서 12층까지 매층 2세대씩 총 22세대이며(101동 및 102동 5호), 현관 및 욕실, 발코니 단차는 최소화로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시공 오차로 인하여 세대마다 단차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 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발코니 쪽에 별도로 마련된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불가합니다.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및 급탕유량계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 가 설치됩니다
- 세대내 실외기실 및 복도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시 소음이 날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지설과 지역편의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양관양]

- 안양관양 경기행복주택은 총 56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주거용도(상가 등)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입니다.
- 사업부지 반경 500m 이내에는 국도 47번 (8차선 이상), 지방도 57번(6차선 이상),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공용주차장, 자동차 정비공장, 교통안전공단 안양검사소, 안양폐차장, 시립어린이집, 인덕원초등학교, 인덕원 중학교, 인덕원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부지 바로 앞에 학의천이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하부로 지하철 4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지하철 운행으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일반음식점 등이 밀집한 상업시설에 인접해 있어 주변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임대주택은 소규모로 건립되어 다른 임대아파트와 비교하여 관리비(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가 다소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층에 위치한 상가는 분양시설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 일반 업무시설이 가능한 바, 소음도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이 입주 이후, 설치되는 업종에 따라 달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52대이며 일반주차 31대, 확장형주차 17대(여성 및 교통약자 6대 포함), 경차 주차 2대, 장 애인주차 2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법정 주차대수 외에 주차 1면은 카쉐어링 전용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으며, 상가 주차장은 1대이며 공동주택 주차 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어 입주자 및 상가, 상가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 주차장 설치로 저층세대는 소음에 불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불빛 등으로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층 공용부에 설치되며 입주 후 에어컨 설치시 시공오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용 실외기실 설치공간 실측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보일러와 가스계량기는 세대내 소음을 줄이고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마련된 공용 보일러실에 설치됩니다.
- 2층 육아나눔터, 4층 공동세탁실, 6층 워크스테이션, 8층 휘트니스, 4층 및 5층 개별창고, 각층에 계절창고 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시 입주민간 자율적으로 정한 규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지설과 지역편의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층의 지역편의시설은 관양2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며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실로서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층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6세 이하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며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 화단 관리시 사용하는 상하수 등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층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 인접 세대(2,3층)에는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층의 공중정원은 실내 조경시설로 식재 등의 주기적인 교체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관리비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의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ELEV.홀 및 복도 천장 마감은 없으며 가스배관은 노출되어 시공 됩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 됩니다.
- 고령자용 세대는 304호~307호, 404호, 405호로 총 6세대 이고, 주거취약 세대는 406호, 407호, 504~507호로 총 6세대 이며, 현관 및 욕실, 발코니 단차는 최소화로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시공 오차로 인하여 세대마다 단차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 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6m² A,B,C,D 타입은 대피공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인접 세대와의 발코니 경계 벽에 경량칸막이 구조의 비상탈출구가 설치됩니다.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화성진안1】

- 사업부지 반경 500m 이내에는 국도 1번 (6차선 이상), 지방도 84번(4차선 이상), 1호선 병점역, 병점초등학교, 병점중학교, 태안초등학교, 아주산업 병점공장, 태안119안전센터, 진안동주민센타 등이 있습니다.
- 본 임대주택은 소규모로 건립되어 다른 임대아파트와 비교하여 관리비(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가 다소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9대이며 일반주차로만 계획되어있습니다.
- 지상 주차장 설치로 저층세대는 소음에 불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불빛 등으로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부가 아닌 옥상에 설치됩니다.
- 1층 방풍실 외의 공용 공간은 실내화(슬리퍼)를 신고 이용하는 공간으로 1층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이용이되어야 합니다.
- 2층에 공동주방(오픈키친), 공동거실(오픈리빙), 공동세탁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1층 로비에 세대 당 1개의 락커가 설치됩니다. 이 시설들은 모두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입니다. 이용시 입주민간 자율적으로 정 한 규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일러와 가스계량기는 세대내 소음을 줄이고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마련된 공용 보일러실에 설치됩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 됩니다.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화성진안2 】

- 사업부지 반경 500m 이내에는 지방도 84번(4차선 이상), 진안초등학교, 진안중학교, 태안초등학교, 병점중학교, 시립어린이집, 태안119안전센터, 병점2동주민센타, 물빛어린이공원, 병점근린공원, 병점시립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 경기행복주택 사업부지는 일반음식점 등이 밀집한 상업시설에 인접해 있어 주변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

생 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임대주택은 소규모로 건립되어 다른 임대아파트와 비교하여 관리비(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가 다소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8대이며 일반주차로만 계획되어있습니다.
- 지상 주차장 설치로 저층세대는 소음에 불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불빛 등으로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층 북측테라스에 설치됩니다.
- 1층 방풍실 외의 공용공간은 실내화(슬리퍼)를 신고 이용하는 공간으로 1층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이용이되어야 합니다.
- 1층에 계절창고, 2층 공동주방(오픈키친), 3층 공동거실(오픈리빙)은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이며 이용 시 입주민간 자율적으로 정한 규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일러와 가스계량기는 세대내 소음을 줄이고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마련된 공용 보일러실에 설치됩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 됩니다.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일부세대(204호, 304호, 404호, 504호)의 경우, 세탁기 설치를 위한 수전이 별도로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12. 경기행복주택1차 계약관리센터 위치

경기행복주택1차 계약관리센터

[과천시 코오롱로11 코오롱타워]

구분

02-3677-6741

모집 최초 2일간
(10.7(월)~10.8(화))은 사전 약속 필요 없으나, 이후(10.10(목)~11/29(금)) 방문시 반드시 사전 약속 후 방문하셔야 상담/접수 가능합니다. ( 사전 약속없이 방문하실 경우 상담/접수 불가하며,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업무시간: 10:00~17:00

※ 점심시간(11:30~13:00), 주말, 공휴일 및 10월4일, 10월14일 상담불가

경기도시공사

입주문의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위 치
기업은행
과천타워
3 4 상성SDS
이마트
1 전호 및 기업은 행 기업은 해 기업은 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전화번호: 02-3677-6741

문의가능시간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11:30~13:00), 주말, 공휴일 및 10월4일, 10월14일 상담불가

2019. 9. 30.



### [붙임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기도시공사와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경기도시공사라 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신청자격별 세대구성원 범위 확인후 전원 서명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도시공사, 국토교통부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 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abla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여부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 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 (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도시

- 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 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 기간
-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 8. [선택]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등 기타 임대주택 정보를 수신받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2] 금융정보등(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서명자는 정자로 서명(흘림서명 금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주의 : 아래 본인포함 작성 금융정보 등의 제공 금융정보 등의 신청자와의 동의자 주민등록번호 사실을 동의자에게 제공을 동의함<sup>1)</sup> 통보하지 아니함2) 관 계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1 월 1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주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 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HO		확인	14
시근	工工	시크	ヨご	ΛI

			시간 <u> </u>	2 76/	<u> </u>	
신	성 명			생년월일		
청 인	주 소					
		무주택	세대구성원 보유 자산0	세 대한 사실 회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 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A) 5) -1 -2 -1	ক □		원	[임차인]	
	임차보증금	아니오 🗆		원	[임차인]	
	ㅂ아크	예 🗆		원	[수분양자]	
기타	분양권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자산	ᆔᄭᄭᄼ	ଡା 🗆		윈	[주주(보유자)]	
	비상장주식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예 🗆		원	[출자자]	
	출자지분	아니오 🗌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ଜା 🗆		원	[임대인]	
十小	급대보증급	아니오 🗌		원	[임대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  한 처벌 <mark>(계약해지 등</mark> )도 김			기 신고 사실이

-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3. 자산 보유 사실을 확인할 해당 세대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상 **입주 자격별 해당 세대**(대학생 계층은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신청인: (인)

20 년 월 일

#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 임 장** (공급신청용(입주자 또는 예비자)□, 계약용□)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체크

의	OI	OL	/보이	위임혀	ᇈ	白ノ
TI			ᅜᆖᆣᄼ	TI -	71 世	正)

성 명: (인)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수원광교□, 안양관양□, 화성진안1□, 화성진안2□) 경기행복주택(신청□, 계약□)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체크표시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 수 임 인(대리인, 위임받는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수원광교) 경기행복주택 공급신청서

# 1. 신청대상 및 접수번호

공급대상	공급유형	공급	호수	신청대선	상 선택	쟡	수번	호 표/	4
<u> </u>	онщо	입주자	예비입주자	입주자	예비자	입주	자	예비	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4m²형					[	]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소득有)	38m²형					[	]	[	]
청년(소득無)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소득有)	36m²형					[	]	[	]
청년(소득無)									
고령자	36m²형					[	]	[	]

# 2.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3. 공급대상 세부 선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청년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산검색 결과 입주자격이 부적합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예비입주자 자격이 취소됨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경기 행복주택 공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붙임: 입주자격 심사/조사용 서류,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 (안양관양) 경기행복주택 공급신청서

# 1. 신청대상 및 접수번호

공급대상	공급유형	공급	l호수	신청대성	상 선택	젙	수번	호 표시	4
<u>on-110</u>	онто	입주자	예비입주자	입주자	예비자	입주	자	예비	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소득有)	36m²형					[	]	[	]
청년(소 <del>득</del> 無)									

# 2.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3. 공급대상 세부 선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청년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산검색 결과 입주자격이 부적합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예비입주자 자격이 취소됨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경기 행복주택 공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붙임: 입주자격 심사/조사용 서류,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 (화성진안1) 경기행복주택 공급신청서

# 1. 신청대상 및 접수번호

공급대상	공급유형 공급호수		신청대상 선택		접수	접수번호 표시			
<u> </u>	ठमπछ	입주자	예비자	입주자	예비자	입주지	ŀ	예비	자
청년(주거약자) (소득有)	20					г	,	r	1
청년(주거약자) (소 <del>득</del> 無)	20					L	J	L	J

# 2.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3. 공급대상 세부 선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청년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산검색 결과 입주자격이 부적합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예비입주자 자격이 취소됨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경기 행복주택 공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붙임: 입주자격 심사/조사용 서류,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 (화성진안2) 경기행복주택 공급신청서

# 1. 신청대상 및 접수번호

공급대상	공급유형	공급호수		신청대상 선택		접수번호 표시	
<u> </u>	ठमπछ	입주자	예비자	입주자	예비자	입주자	예비자
청년(소득有)	17&18						
청년(소득無)	17010						
청년(소득有)	20						
청년(소득無)	20					l J	l I
청년주가약제소득有	22						
청년주가와(소득無	22						

# 2.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3. 공급대상 세부 선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청년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산검색 결과 입주자격이 부적합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예비입주자 자격이 취소됨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경기 행복주택 공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붙임: 입주자격 심사/조사용 서류,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 경기행복주택 공급신청 접수대장

NO	사업 지구명	공급대상	공급 유형	입주자 구분	신청자 성 명	서명	호출응답 체크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입주자 □			응 답 🗆
				예비자 🗆			불응답 🗆

# [붙임6]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예비신혼부부用)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경기	행복	<b>주택의</b>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성명 • 주민 • 주민 • 연락	: 등록성 등록t 처 : <b>인(2)</b>	상주소 : 번호 : ***********************************				
	• 주민· • 연락						
	구분	동의	동의내역				
	공동 신청		상기 신청인 (1), (2)는경기행복주택에 공동으로 신청함				
	개인 정보		상기 신청인 (1), (2)는 <u>경기행복주택</u>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상기 신청인 (1), (2)는 <u>경기행복주택</u>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전까지 혼인 관계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 할 수 없음을 확인함				
•			년 월 일				

# **경기도시공사사장** 귀하

신청인1(대표신청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인)

# [붙임7]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예비신혼부부用)

#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경기행복주택의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지정 기간만료일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 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번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분
본인		-		동일세대 🗆 분리세대 🗅
배우자		-		
<i>부</i>		-		
		-		
		-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인)

# 동 의 서

계 약 대 상 : [ ]경기행복주택 동 호

상기 경기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에 동의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향후 해약시에도 계약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계 약 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법정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감날인)

20 년 월 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 ※ 담당자 확인사항

- 1.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은 필수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 할 것.
- 2. 법정대리인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한 인 감증명서 수령하여야 할 것.
- 3.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부모의 부존재 확인해야함.
- 4.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 판결서로 증빙을 받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 5. 법정대리인 현장방문 불가시 위임장(인감날인) 추가 수령.

### ※ 동의서 징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인감도장

\* 법정대리인 현장방문 불가시 인감날인한 위임장 추가

\* 친권자가 아닐 경우 법원에서 법정대리인 판결 요망

# 경기행복주택 현장계약 확인서(현장신청용)

# 1. 계 약 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2. 계약주택

지구	공급유형(타입)	공급대상(계층)	동 호

위 계약인은 현장에서 서명을 완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대리인 포함): (서명)

※ 붙임 :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